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가까운 약 13만 명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 또한 문래 창작촌 등을 통해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청년 문화예술이 시대를 선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구에 청년이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 및 방향성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청년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청년 문화예술”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등이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따른 청년으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지원의 방향 및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청년 문화예술 사업)는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육성 및 일자리 연계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사업의 위탁)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2023년 9월 기준, 현재 우리 구의 청년 인구는 130,695명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구에 해당하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연·전시 등의 사업 외에도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역예술인” 등의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예술인”의 정의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의 “청년 문화예술인”은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점을 형평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 임헌호·김지연·이규선
전승관 의원(4인)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구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가까운 약 13만 명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이 3번째로 높음. 또한 문래 창작촌 등을 통해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청년 문화예술이 시대를 선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구에 청년이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이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 및 방향성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청년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10. 11. ~ 10. 15.):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홍보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연계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청년의 정책 참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 개인,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